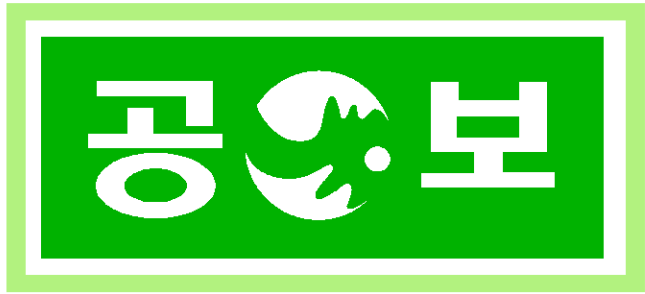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관	기 관 의 장



제 744 호 2012. 3. 12(월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3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31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4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-203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6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 30호

##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3월 1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3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3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79-1, 679-4	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3	2012. 3. 12	건물멸실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 - 31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3월 12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7길 1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3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계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 명촌지구 29B 4-3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7길 1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 부여	
2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614-1	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3길 3	2004-08-09	기존 자연마을인 신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	
3	울산광역시 북구 중신동 679-1	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3	2004-08-09	기존마을 자연부락 명칭인 화정마을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 부여	
4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79-4, 679-10	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3-1	2004-08-09	기존마을 자연부락 명칭인 화정마을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 부여	
5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01-39, 701-40	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13	2004-08-09	예전 지명인 달곡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-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8	2009-01-23	진장유통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 부여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2-203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2년 3월 12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
-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 개선
  - 임용자격기준,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, 시간제 근무 도입 등
-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 및 운영상 개선사항

#### 2. 주요내용

- **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**
  -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
: 안 제4조제3항(별표)
- **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**
  -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: 안 제5조제1항  
⇒ 5급 상당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자체 시행 또는 시·도 인사위원회 의뢰
  -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: 안 제5조제4항  
⇒ 임용시험방법(제44조), 임용시험의 단계(제45조), 시험위원(제48조) 등  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을 준용

○ **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**

-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·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 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: 안 제5조의2

○ **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**

-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 : 안 제5조제3항
- ⇒ 동일직무분야에서 상위 별정직으로 재임용되거나,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재임용될 때 공고생략 후 재임용할 수 있게 하여 사기 진작
- ⇒ 별정직 평균근속연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거의 2배로 장기간임을 감안 상위 직위 결원 시 하위 직위자를 공고생략하여 재임용하도록 규정

○ **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**

- 새로운 공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교육 이수기회 부여 : 안 제8조의2

○ **직권면직 사유 중 “신체·정신상의 이상” 삭제**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: 안 제10조

○ **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**

- 질병·소재불명·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: 안 제11조

○ **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**

-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: 안 제12조의2

3. **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**

4. **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일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**5. 제출처**

- 가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
- 나. 전화번호 : 052-219-7232, 팩스번호 : 052-219-7239

**6. 참고사항**

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